

第97回(定期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5號(附錄)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議政會設置및育成支援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5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8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1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8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3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30面
 8. 淸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區域(建築計劃) 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 結果報告書 36面
 9. '99年度 運營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38面
 10. '99年度 市民行政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42面
 11. '99年度 財務建設委員會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57面

1. 서울특별시중로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안)

審査報告書

1999. 12. 22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
 운영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6일 · 홍기서 의원 외 9인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97회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 정기회
 제 2차('99. 12. 21)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홍기서 의원)

가. 제정 이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종로구의회의 발전과 종로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 연구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의정회의 구성 및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안제2조)
- 2) 의정회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종로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안제3조)
- 3)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안제4조)
- 4) 의정회는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첨부, 다음년도 3월말까지 종로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안제5조)

다. 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
- 서울특별시종로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강광일)

가. 제정 이유

○종로구의회 전·현직 의원을 회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종로구 의정회가 정식 법인으로 인가됨에 따라 의정회의 지원 육성을 도모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정회 추진사업을 정함
 -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지방자치 회보 발행
-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예산 및 결산
 - 예산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 결산서를 익년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다. 검토자료

【 종로구 의정회 설립현황 】

- 인 가 일 : '98. 12. 16 (서울특별시장)
- 회 장 : 이 두 학

【 법인 설립 근거법규 】

< 인가 근거 >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인가 기준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 예산 및 결산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②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회계년도의 개시 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회계년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권한위임 >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주무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하급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라. 검토의견

- 의정회 관련조례는 지방의회의 연륜이 쌓일수록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 일부 상위법과의 상충점으로 전 구에 보편화되지 않았음. 즉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조례로 특정 예산편성을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과
- 예산 및 결산보고를 구청장에게 하도록 함은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상의 주무관청(서울시장)에 제출해야 하는 점과도 상충되는 점 등이 지적되어 각 자치구에서 제정을 유보하는 상태에 있었으나
-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이 본 조례를 기이 제정하여 1억원 내외의 예산 지원을 기정화하고 있고, 은평구도 '99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 구에서 이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김이환 위원, 이현구 위원)

(답변자 : 홍 기 서 의원)

문) 현재 타구의 조례 제정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 이미 제정된 곳은 서울시와 은평구이며 강남구와 송파구 등 4~5개 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문) 의정회의 예산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통제가 됩니까?

답)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예산보조금을 받으면 당초 계획서대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행정 사무감사 등의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이형술 의원 원안 가결 동의

6. 審 査 結 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2.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1999. 12. 2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3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9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 5차('99. 12. 2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병만)

가. 개정이유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별정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직의 확대 배치와 관련 정원이 증원 책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정원의 총수 1,242명을 1,259명으로 17명을 증원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1,218명 → 1,235명(+17명)
- 2) "정원에 관한 적용례"로서 부칙 조항으로 명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 정원표(「표」, 「표 2」)의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에 각각 17명을 증원함(안 부칙 제2조)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시달(서울시 조직12200-79, '99.10.5)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광일)

가.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

○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적 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행자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임

○ 사회복지직 정원 승인내용 및 직급별 정원

승인내용			직급별 정원			
계	기존	추가승인	계	7급	8급	9급
19명	2명	17명	19명	7명	6명	6명

○ 일반직·별정직 구분

- 일반직 :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예) 행정직, 세무직, 건축직, 토목직, 사회복지직
- 별정직 : 보수 및 복무를 제외하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예) 비서관, 비서, 기타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자격기준

임용자격	직무내용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자	·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주요 골자 >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242명을 사회복지직 17명이 추가 승인되어 1,259명으로 함 (집행기관의 정원:1,218명→1,235명)

나. 검토의견

○ 사회복지직의 추가 배치로 날로 증대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수행이 기대됨

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표준정원의 책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기서 위원)

(답변자 : 총무과장 이병만)

문) 사회복지직 17명은 공채를 통하여 임용됩니까?

답) 서울시에서 일괄 공채하여 각 구에 배정합니다.

문) 기존의 2명과 추가로 늘어나는 17명이 모두 동에 1명씩 배정되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문) 사회복지직은 언제 배치됩니까?

답) 2000년 1월중에 될 것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3.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1999. 12. 2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3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9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 5차('99. 12. 2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병만)

가. 개정이유

날로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되고 있는 생활체육행정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활체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우리 구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1) 지방별정직지도사 7급상당 임용자격기준 항목에 “4년제 대학의 체육특기자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이상인 자”신설

다.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
-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표준안)
-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별표1)
 - 행정관리분야 지도사 7급상당 임용자격기준 제5호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광일)

가.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

- 생활체육 행정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생활체육 행정구현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인 행정관리분야 7급 상당 지도사의 임용자격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 7급 상당 지도사의 임용자격기준

직 명	직 급	직 무 내 용	임 용 자 격
지도사	7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 ·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4년제 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 주요 골자 >

- 행정관리분야 7급 상당 지도사의 임용자격기준에 “4년제 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추가

나.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

- ④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다. 검토의견

- 4년제 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 이상인 자는 통념상 체육에 관한 재능과 조예가 깊은 자이므로 7급 상당 지도사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 서울시의 7급 상당 지도사 임용자격기준에 기이 규정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흥기서 위원)

(답변자 : 총무과장 이병만)

문) 7급 상당 지도사의 임용자격 기준에 보면 “일반직 8급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생활체육)분야 행정근무 경력자”가 있는데, 구청 문화진흥과 일반직 직원도 이에(별정직7급) 해당이 됩니까?

답) 그렇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4.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1999. 12. 2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3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9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 5차('99. 12. 2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병만)

가. 개정이유

구민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과 문화·생활체육시설 제공 등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종전의 관련규정을 재정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1) 제명변경

종전의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 및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

2) 목적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조, 안 제2조)

3) 관리 및 운영, 비용부담, 운영위원회 운영 등(안 제3조 내지 제5조)

4) 사용료 징수 및 운영, 입장료 징수 및 제한 등(안 제7조 내지 제11조)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제131조, 제135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 제3조는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구청장 책임 하에 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근거한 규정이며
- 제4조는 위탁운영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용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의 규정에 근거한 조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제5조는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종로구민회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바 규칙에의 규정사항 등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제6조, 7조는 회관시설 및 설비의 대관승인 및 임대사용 허가에 관한 조항으로 일정한 경우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일부 감면의 경우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하였던 바 감면비율에 대한 검토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30% 이내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 전액 면제

- 구청장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 국가·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들이 직접 종로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의 보호나 지원을 받는 자. 즉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자녀결혼식

▷ 50% 범위 내에서 감면

- 구위선양과 체육진흥,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제8조는 시설별 사용료에 관한 조항으로 수영장, 체육관, 탁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서울시 및 타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요금체계와 동일하며

가.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

○ 구민회관의 신축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문화되었던 「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

○ 조례 제명을 변경

- 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 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 회관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규정함

○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조문별 검토

○ 제1조, 2조는 목적, 위치에 관한 일반규정임

○ 대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 전시실 등 기본시설과 피아노, 음향기기, 영사기 등 부속시설 및 컴퓨터 교육시설의 사용료는 타구와 대비 중하의 요금수준으로 분석됨

- 제9조에서 사용자가 구청장과 협의 하에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액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토록 한 것은 서울시 및 타구의 사례와 유사한 내용임
- 제10조 및 제11조는 타당함

다. 구민회관 시설별 현황

시 설 별	구 분	면 적(평)	설 치 목 적	비 고
기본시설	대 강 당	211.13 (460석)	영화, 공연, 결혼식 등	2층
	대회의실	52.42	행 사	2층
	소회의실	27.07	행 사	2층
	전 시 실	51.73	전 시	1층
교육시설	컴퓨터실	33.58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3층
체육시설	수 영 장	343.98	성인남녀, 청소년, 어린이	지하1층
	체 육 관	290.68	검도, 배드민턴, 농구	4층
	헬스장	97.69	성인남녀, 청소년	3층
	에어로빅실	58.47	성인남녀	5층
	신체조실	38.75	단학, 재즈댄스, 차밍디스코(여),스포츠댄스(여)	5층
기타시설	사 무 실	34.84	관리사무실	1층
	식 당	90.62	위탁운영 예정	지하1층
	매 점	6	위탁운영 예정	지하1층
	주 차 장	504.61	52대 주차	지하2층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3,383.29평

라. 타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현황

< 기본시설 >

시 설 명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종로구(안)
대강당	행사	70,000	90,000	80,000	110,000	100,000	100,000	100,000	80,000	98,000	80,000
	결혼식	미설치	50,000	50,000	90,000	미설치	50,000	80,000	미설치	미설치	50,000
대회의실		50,000	3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소회의실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10,000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10,000
전 시 실		50,000	20,000	20,000	50,000	미설치	50,000	50,000	미설치	40,000	30,000

*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는 무료임

< 교육시설 >

시 설 명	은평·서대문	강 남	종 로 구 (안)		
	주 3회	주 3회	주 1회	주 2회	주 3회
컴퓨터실	35,000	30,000	10,000	20,000	30,000

< 부속시설 >

시 설 명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종로구(안)
피 아 노	20,000	10,000	10,000	25,000	30,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음향기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	10,000
영 사 기	22,000	20,000	10,000	20,000	20,000	미설치	20,000	10,000	20,000	20,000
녹 음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10,000	10,000	미설치	10,000	미설치	미설치	10,000
무대조명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	20,000	10,000	20,000	10,000	10,000
냉 난 방	미설치	미설치	미설치	연료가	연료가	연료가	15,000	미설치	50,000	20,000

*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는 무료임

< 체육시설 >

○ 체육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하여 서울시와 각 구의 요율이 동일함

마. 검토의견

○ 구민회관은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 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사용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바.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공사(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이동규 위원, 정태순 위원, 김정대 위원, 안재홍 위원)

(답변자 : 총무과장 이병만)

문)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보면 종로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구민회관을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제4조에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일반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문) 구민회관의 사용료를 무료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 무료로 하면 이용자들의 관리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문) 이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구의원 개인이 하는 의정활동도 포함이 됩니까?

답) 구의회 의장의 승인이 있으면 모두 가능합니다.

문) 구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가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비교해 보았습니까?

답) 시중보다 30%정도 저렴합니다.

5. 討 論 要 旨 : 안재홍 위원 수정동의

- 제3조(관리 및 운영)의 단서조항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제5조(운영위원회)의 제1항에서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에 위하여...”를 “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로 하며
- 제9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의 제3항 “제1항의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의 경우 제8조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로 수정

6. 審 査 結 果 : 수정가결

-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 가결: 수정(안) 별첨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

발의년월일 : 1999. 12. 21

발 의 자 : 시민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 중 이미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만한 자구를 삭제 또는 수정함으로써 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골자

- 제3조(관리 및 운영)의 단서조항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제5조(운영위원회)의 제1항에서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를 “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로 하며
- 제9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의 제3항 “제1항의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의 경우 제8조제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로 수정

5.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1999. 12. 2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3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9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 5차('99.12.2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동연호)

가. 개정이유

○'99. 2.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과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 및 일부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조례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며, 동 법률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리 구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 및 일부 내용 수정
 - 법조항 수정: 조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8조제1항
 - 내용수정: 조례 제10조제3항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 일부 수정
- 2)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규정된 조항 삭제
 - 조례 제20조제1항, 제2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 삭제
 - 조례 제20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다. 개정근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5864호, '99. 2. 8)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6508호, '99. 8. 6)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환경부령 제83호, '99. 8. 9)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광일)

가.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임

< 주요 골자 >

-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항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
 - 조례 제3조제1항 : 규칙 제30조제3항 삭제
 - *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삭제
 - 조례 제4조제2항 : 법 제58조제1항(과태료징수규정)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개정
 - 조례 제18조제1항 : 규칙 제18조 삭제(합병정화조 규정 삭제)
- 조례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을 시행령 제27조 관련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개정
 - *시행규칙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일부 수정
-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제20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기준 개정내용 >

○분뇨수집운반업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사무실	· 전용면적 15㎡이상	· 사무실	규모없음
차 량	·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이상 (용량합계3,600ℓ 이상)	현행과 같음	
차 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대당) -5톤미만 : 13㎡ -5톤이상 10톤미만 : 26㎡ -10톤이상 : 36㎡	· 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상	
기술능력	· 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자본금	· 법인 : 5천만원이상 · 개인 : 재산평가액 1억원이상	삭 제	시행령개정
전 화	· 2대이상	삭 제	
기 타	· 소독조 1조이상 · 종사원 목욕시설	삭 제	

○ 정화조청소업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사무실	· 전용면적 15㎡이상	· 사무실	규모없음
차 량	·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이상 (용량합계30,000ℓ 이상) · 오니처분용 화물차 1대이상	현행과 같음 삭 제	
차 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대당) -5톤미만 : 13㎡ -5톤이상 10톤미만 : 26㎡ -10톤이상 : 36㎡	· 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상	
기술능력	· 수질환경기사, 위생사, 환경기능사 중 1인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당해업종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 정화조의 청소업종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현행과 같음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의 청소업종에 종사하는 인력 2인이상	
자본금	· 법인 : 5천만원이상 · 개인 : 재산평가액 1억원이상	삭 제	시행령개정
전 화	· 2대이상	삭 제	
기 타	· 소독조 1조이상 · 종사원 목록시설	삭 제	

나. 검토의견

- 조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8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 삭제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 조례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2】에서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을 시행령 제27조 관련 신설된 【별표6】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한 것은
-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 대행계약을 하려면 법 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하여야 하므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신설 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58조와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12조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였으므로 조례 제20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과태료의 징수 절차”로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관련법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

○법 제18조(분뇨처리업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35조(분뇨등관련영업)

①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58조(과태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14조제2항 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99.2.8 개정)

○시행령 제27조(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업종별 기준은 별표6과 같다.('99.8.6 신설)

[별표6]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27조관련)

1. 분뇨등수집·운반업

시 설 및 장 비	기 술 능 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 이상 (용량의 합계 3,600ℓ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인 이상

3. 정화조청소업

시 설 및 장 비	기 술 능 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차량 1대 이상 (용량의 합계가 특별시 지역은 3만ℓ 이상, 광역시 지역은 7,500ℓ 이상, 기타 지역은 3,600ℓ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당해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 수질환경기사·위생사·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당해 업종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에 종 사하는 인력 2인 이상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8과 같다.(1999. 8. 6 신설)

○시행규칙 제18조(합병정화조의 설치기준)

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1999. 8. 9 삭제)

○시행규칙 제30조(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9. 8. 6 삭제)

○시행규칙 제1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없 음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 가결

7. 少 數 意 見 의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6. 서울특별시종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1999. 12. 2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 查 經 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3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9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 5차('99.12.21)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현식)

가.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공공시설을 법인·개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제4조)
- 2)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3)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금·대부료·감면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제19조, 제19조의2)
- 4)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시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제21조)
- 5)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 공유재산의 매각시 분할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 대부료(사용료), 변상금 요율 완화(제21조의2, 제22조)
- 6) 주거용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최저요율로 완화(제22조)
- 7) 구에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 8)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최저 사용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제22조)
- 9)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공개입찰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 10)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토지의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토록 함(제24조)
- 11)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공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정함(제30조의3)
- 12)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제도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함(제60조)

다. 개정근거

- 지방재정법중개정법률(법률 제5647호, '99. 1.21)
- 지방재정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6267호, '99. 4.30)
- ○○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행정자치부 공기13340-415, '99. 5.31)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보(서울시 재산45500-2267, '99. 10.9)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가. 개정 이유

- '99년 4월 30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새로운 시대의 경제도약을 위해 필요한 외국투자자의 유치나 벤처기업의 지원 육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 총 25개 조항을 개정
 - ┌ 상위법 개정 : 6개 조문
 - ├ 합리적 제도개선 : 8개 조문
 - └ 자 구 수 정 : 11개 조문

○ 주요 골자

- 새로운 경제도약 기반 구축
 - 외국인 투자자에게 재산, 매각, 대부 등에 유리조건 부여
 -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공유재산 대부료 최저요율 적용

- 도시개발 촉진
 - 주택재개발 시행지구 내 구유지 20년부 매각제 시행(년5%)
- 저소득 시민보호
 - 생활보호자 거주주택의 대부요율 인하 (10/1000)
- 기타
 - 지구수정과 일반관리사항

다. 개정원인별 분석

원인별	대 상 조 문		개 정 내 용
	조 문	제 목	
상위법 개정	제16조	불용재산의 처분	령 제83조의2와 중복되므로 삭제
	제21조의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재개발구역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제22조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	구유지상 사유주택 대부요율 25/1000, 재개발지역 10/1000
	제22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2회이상 대부 입찰 유찰시는 요율 20%이내 감액 가능
	제30조의3	신탁의 종류	잡종재산의 수익을 위하여 신탁회사에 신탁 의뢰 가능
	제38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	감면매각재산은 전매 못하도록 특약등기 의무화
합리적 으로 개정	제4조	마을회관 등 위탁	목적 외 사용 때는 제재 가능(사용료)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축소
	제10조	용도폐지	10평미만 또는 1,000만원이하 재산은 공유 재산 심의생략 가능
	제17조	잡종재산의 현황과악	과악대상 축소
	제24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경계가 애매한 점용면적간에 대한 산출방식 설정
	제26조	대부료의 사용제한	재산 유지관리에 사용
	제27조	대부료의 연체요율	일반 년 15% 재개발 년 10%
제44조	청사정비계획	청사신축계획 사전수립 의무규정 삭제	

원인별	대 상 조 문		개 정 내 용
	조 문	제 목	
자 구 수 정	제5조	은닉재산 신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 령을
	제14조	사용허가부 비치	구유재산관리공무원 → 재산관리관
	제19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100조제2항제5호 → 100조제2항 및 동조4항
	제19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	인정하는 지역의 → 인정하는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공장건설에 필요한 → 사업목적상 필 요한
	제22조의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 사업목적으로
	제2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제1항내지 제3항 → 제1항 및 제2항
	제28조	대부정리부	구유재산관리 공무원 → 재산관리관
	제38조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범위	위치하거나 → 위치하거나 둘러싸인
	제49조	정의	사용하고 있는 주택 → 공용주택
	제60조	준용	국유재산법 준용 →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등 준용

라. 본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을 무상운영조건으로 위탁운영 받은 자가 수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때
는 사용료를 부과
- 주택재개발지구내 구유토지는 20년 년부로 매각 가능 년 5%이자
- 공유재산 점유 사유건물(신발생 무허가 제외)의 대부요율은 당해재산가액의 25/1000 주택재개발
지구내 대부요율은 15/1000, 생보자는 10/1000으로 한다.
- 대부재산은 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시는 대부료를 20%이내 감액 조정할 수 있다.
- 대부료의 연체요율은 일반지역은 년 15%, 주택재개발지구는 10%
- 잠종재산의 수익을 위하여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으로 전문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등에 재산의 매각대금을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는 전대하지 못하도록
특약 등기를 의무화한다.

마. 상의법 개정내용

<지방재정법 시행령 99. 4. 30자 개정요지>

개정 조문	내 용
제83조의2	재산매각 대금의 용도는 대체재산 확보에 가능한 한 활용
제96조제1항	자치단체간 재산교환시는 개별공시지가 적용 가능
제96조제3항	개별공시지가 1,000만원이하 재산의 대부, 매각시는 감정평가 생략 가능
제100조제2항5호	외국인 투자기업에 재산 매각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자는 년 4%를 초과 못함
제100조의3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공유재산 매각시는 년 5%이자로 20년 년부 가능 대부료는 15/1000
제102조의4	잡종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

바.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 개정 방향은 새로운 시대의 경제도약을 위해 필요한 외국투자자의 유치와 벤처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과
-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구내 공유토지의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저소득 생활보호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현실적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최강순 위원, 오금남 위원, 정병환 위원, 김복동 위원, 이형술 위원)

(답변자: 재무국장 김현식, 재무과장 이동명)

문) 주택재개발 시행지구 내 공유지 20년부 년 5% 이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답) 1년거치 20년 분할상환입니다.

문) 10평미만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취득, 처분 시에도 적용됩니까?

답) 용도폐지 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7.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9. 12. 2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 무 건 설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3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9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 5차('99.12.21)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김현식)

가. 개정이유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서울시 수수료와 물가 상승지수를 감안하여 현행 수수료 요액을 조정함으로써 요금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별표에 정한 수수료 종목을 정비하고 요액을 적의 조정(안 제3조)
- 별표에 정한 수수료 종목의 삭제(광고물설치허가)에 따라 수수료 감면 내용을 규정한 본문의 관련조항을 삭제(안 제6조)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등 해당 관련법률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소수)

가. 추진 경위

- '97. 12. 17 : 국정실천 100대과제 선정(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 행자부
- '98. 5. 1 : 수수료, 사용료 검토지시 (행자부 → 구)
- '98. 5. 7 : 원가 검토 (세무1과 → 해당과)
- '98. 10. 29 : 수수료 현실화 방침 결정
- '98. 11. 5 ~ '99. 2. 1 : 개별법규별 개정내용 검토
- '99. 6. 23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통과)
- '99. 7. 26 : 종료구 물가대책위원회 (통과)

나. 주요 골자

< 본 문 >

- 제1조 목적조항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조항을 삭제
- 제6조제2항 “삭제”

< 별 표 > 수수료징수금액

○ 현행 162종 → 개정(안) 103종

요율조정 : 21	}	162
폐 지 : 120		
존 치 : 21		
신 설 : 61		

다. 수수료의 징수·폐지를 규정한 관련법규

【 폐지를 규정한 법규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 > - 49개 종목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 신고시 또는 안전도 검사시에 각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99.1.18)

< 공중위생법 >

○ 부칙 제2조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99.2.8)

○ 공중위생업이 자유업이 된 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업자는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수수료 신설을 규정한 법규 】

< 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 개정(안) 분석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본 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	지자법 제127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므로 수수료 규정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음
	제6조(감면) ②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 삭제)	광고물 등 설치 허가근거 규정인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수수료는 서울시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 조례에 규정 근거가 없음
별 표 (수 수 료)	소 계	120개	
	폐 지	49개 종목 폐지	관련법에서 시조례로 규정토록 됨
	공중위생관련수수료	37개 종목 삭제	공중위생법 폐지
	기 타	34개 종목 삭제	개별법령에 근거 상실

구 분	현 행		개 정		발급건수 ('98년)	
	건 명	수수료액	수수료액	인상률(%)		
별 표 (수 수 료)	요 율 조 정 (21 개)	1. 인감증명	300	400	33.3	208,084
		2. 지방세 완납증명	350	500	42.9	17,540
		3. 세목별 과세증명	350	500	42.9	25,670
		4. 무허가건물 확인원	350	500	42.9	568
		5. 공장등록 증명	350	500	42.9	101
		6. 의료기관 약국	550	800	42.5	341
		7. 무적증명	350	500	42.9	4
		8. 거주에 관한 증명	350	400	14.3	328
		9. 영문국제결혼증명	3,300	5,000	51.5	1,085
		10. 경계명시측량	5,500	7,500	36.4	16
		11. 물품납품실적 증명	350	500	42.9	35
		12.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명	350	500	42.9	94
		13.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350	500	42.9	525
		14. 문서의 열람	100	150	50.0	0
		15. 문서의 복사	100	150	50.0	0
		16. 사도개설허가신청	550	750	36.4	3
		17. 출판사 인쇄소등록	550	750	36.4	490
		18. 공유재산 대부신청	550	1,000	81.8	9
		19. 공유재산 매수신청	550	1,000	81.8	31
		20. 인감(신규,변경) 신고	250	300	20.0	10,844
		21. 입찰참가 신청	550	1,000	81.8	11,984

마. 타구 개정 현황

○25개 구 중 8개 구 조정

○타구 조정 내용

(단위:천원)

종 목	우리구 인상안	타 구 현 황							
		중 구	동대문	성 북	강 북	도 봉	노 원	강 서	송 파
인감증명	400	400	300	400	400	400	400	400	500
지방세완납, 비과세증명	500	500	350	500	500	500	500	500	500
세목별과세증명	500	500	350	500	500	500	500	500	500
무허가건물확인원	500	500	350	500	500	500	500	500	500
공장등록증명	500	500	350	350	500	0	500	500	350
의료기관사실증명	800	750	550	550	700	700	800	1,000	700
무적증명	500	500	350	350	500	500	500	500	350
거주에 관한 증명	400	500	350	350	500	500	500	500	350
영문국제결혼	5,000	3,300	3,300	3,300	5,000	3,300	3,300	4,300	3,300
경계명시측량	7,500	7,500	5,500	5,500	7,500	7,500	8,000	7,500	5,500
물품납품실적	500	500	350	700	500	500	500	500	2,000
일반경쟁입찰	500	500	350	1,000	500	500	500	500	2,000
물품 또는 공사사실	500	400	350	700	500	400	400	500	2,000
문서열람	150	150	-	100	200	100	100	-	200
문서복사	150	150	-	100	200	100	100	-	200
사도개설허가	750	750	550	550	1,000	750	800	800	550
출판사등록	750	750	550	550	800	750	800	800	3,000
공유재산대부	1,000	950	550	1,300	1,000	10,000	950	550	950
공유재산매수	1,000	950	550	1,300	1,000	10,000	950	550	950
인감신고	300	350	250	400	500	350	350	400	400
입찰참가신청	1,000	-	550	2,000 ~ 5,000	800	1,000 ~ 20,000	650	1,000	5,000 ~ 10,000

바. 년도별 물가상승률

(단위:%)

구 분	계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소비자물가	55.1	8.9	9.8	5.6	5.0	6.1	3.8	4.2	4.2	7.5
도매물가	39.2	4.1	4.8	2.1	1.5	2.7	4.7	3.2	3.9	12.2

사. 검토의견

- 금번 인상된 21개 수수료의 평균인상률은 45.8%이며, 전체건수 (103종) 대비는 9.34% 인상되었음
- 이 인상률은 그동안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인상률이며, 기이 개정한 타구 인상률과도 유사한 내용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이형술 위원, 최강순 위원, 김복동 위원)

(답변자: 도시계획과장 정 진 호)

문) 서울시 25개 구청 중 8개 구가 이미 개정되었는데, 타구에 비해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시기를 늦추었습니다.

문) 이번에 인상되는 21개 수수료의 평균인상 부담률은 몇 %입니까?

답) 평균인상률은 45.8%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 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8. 청진구역제6지구도심재개발구역(건축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結果報告書

1999. 12. 2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 무 건 설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12월 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9년 12월 13일
- 다. 상정일자 : 제9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기회
 제 5차('99. 12. 21)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정진호)

가. 제안이유

세부적인 건축계획수립 결과 지하층 설치에 따른 연면적 증가 및 대지내 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의한 용적률 완화적용으로 용적률을 증가하고자 하는 건축계획 변경 사안으로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함

나. 주요골자

- 1)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청진동 166번지 외 80필지(8,655.50㎡)
- 2) 건축계획 변경결정(안)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층)	높이(M)	용도
기 정	50이하	800이하	54,952이하	24이하	100이하	업무, 판매, 근린, 주거
변 경	변경없음	880이하	102,492이하	변경 없음	변경 없음	변경 없음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김복동 위원, 김이환 위원, 선상선 위원, 이형술 위원, 정병환 위원)

(답변자: 도시계획과장 정진호)

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굳이 진행해야 합니까?

답) 토지소유자로부터 건축변경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합니다.

문) 당초(안)에는 지하1층이 있었습니까?

답) 당초 계획에는 지하1층이 없었습니다.

4. 意見採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9. 1999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의안 번호	714
----------	-----

제안일 : 1999. 12. 23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 종로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감사기간 : 1999. 12. 4(1일간)
- 감사대상기관 : 종로구의회 사무국
- 감사실시경과
 - 감사반의 편성 : 흥기서 의원 외 8인
 -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소회의실
- 주요감사실시내용
 - 1999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의안 및 진정서 접수처리 현황
 - 기타 의정활동 지원사항 등
- 감사실시결과
 - 시정·처리 요구사항 : 3건
 - 건의사항 : 2건

3. 보고서(안) : 별 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9. 12. 23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제 목 : 1999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위의 보고서(안) 채택의 견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1999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부. 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

1. 監査의 目的

- 종로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게 하여
-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監査期間 : 1999. 12. 4(1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종로구의회사무국

4. 監査實施經過

- 감사반의 구성
 - 위 원 장 : 홍 기 서
 - 간 사 : 김 복 동
 - 감사위원 : 정 태 순, 이 현 구, 유 찬 중, 이 형 술, 오 필 근, 김 이 환, 김 정 대

5. 監査方法

- 현지확인 또는 보고·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
-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6. 主要監査實施內容

- '99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7.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

가. 主要 是正·處理 要求事項

- 타 의회 의원 방문시는 내방사실을 전 의원들에게 사전 연락하여 의원 상호간의 친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의회 홍보기능이 미약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니 의회회보 발간 등 홍보활동 강화를 도모하도록 할 것
- 개원기념행사 참석주민 초청을 통·반장, 직능단체 간부 등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향후는 중·소상인, 택시기사 등 동 저변층도 다수 참석되도록 할 것

나. 建議事項

- 구의원에게 배부되는 의원현황표 등 각종 유인물은 배포선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제작수량을 적정하게 제작 배포할 것이며 재질을 너무 고급화하여 예산을 낭비하여 주민의 비난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효율적인 조례(안)의 이해와 심사를 위하여 회부안건의 사전설명 간담회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람

10. 1999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시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의안 번호	715
----------	-----

제안일 : 1999. 12. 23.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제안이유

-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감 사 기 간 : 1999. 11. 29 ~ 12. 4(6일간)
- 감사대상기관 :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동사무소(19개동), 시설관리공단
- 감사반의 편성 : 이 현 구 의원 외 8인
- 감 사 장 소 :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동사무소 감사장, 시설관리공단 감사장
- 주요감사실시내용
 - 1999년도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현황
 - 문화행사·문화재 관리사항 및 자체감사 활동 사항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청사관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과 동행정지도 관련사항
 - 저소득시민의 보호 및 가정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사항
 - 위생업소의 지도단속 및 상공, 연료, 물가와 환경에 관한 사항
 - 쓰레기종량제 추진실태 및 환경미화원에 관한 제반 사항
 - 1999년도 방역사업 등 보건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주민등록 관리 및 민원처리 사항
 -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상태 등
- 감사실시경과
 - 시정·처리 요구사항 : 29건
 - 건의사항 : 27건

3. 보고서(안) : 별 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9. 12. 23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제 목 : 1999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시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의 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1999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시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부. 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시민행정위원회위원장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

1. 監査의 目的

-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 효율적으로 행정의 집행상태를 감시 감독하여 구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監査期間 : 1999. 11. 29. ~ 12. 4(6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동사무소(19개동), 시설관리공단

4. 監査實施經過

○ 감사반의 구성

- 위 원 장 : 이 현 구
- 간 사 : 안 재 흥
- 감사위원 : 정 태 순, 천 상 옥, 유 찬 중, 박 종 식, 홍 기 서, 이 동 규, 김 정 대

5. 監査日程 및 場所

감 사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99.11.29 ~ 11.30	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현장확인 등
'99. 12. 1	행 정 관 리 국	시민행정위원회회의실	"
'99. 12. 2	생 활 복 지 국	시민행정위원회회의실	"
'99. 12. 3	보건소, 감사담당관	시민행정위원회회의실	"
'99. 12. 4. 13:00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

6. 現地確認班 編成

반별	동 명	위 원 명	비 고
1	청운동, 효자동, 무악동	유 찬 중, 오 금 남	
2	부 암 동, 평 창 동	정 태 순, 김 이 환	
3	삼 청 동, 가 회 동	김 정 대, 김 복 동	
4	교 남 동, 사 직 동	홍 기 서, 선 상 선	
5	종로1,2,3,4가동/5,6가동	이 헌 구, 최 강 순	
6	명륜3가동, 혜화동	이 동 규, 이 형 술	
7	이 화 동, 창신2동	안 재 홍, 정 병 환	
8	창신3동, 송인1동	천 상 욱, 오 필 근	
9	창신1동, 송인2동	박 종 식, 현 수 한	

7. 主要監査 實施內容

소관 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감사담당관	공무원 징계현황('98,'99): 징계요구 공무원(6급이상, 7급이하 구분) - 징계사유 및 내용, 소송 및 소청 내용
감사담당관	연간 감사기본계획에 따른 감사실적 및 조치사항('98,'99): 부서별, 동별, 기타 기관 등
감사담당관	외부감사기관(서울시, 감사원 등)의 수감내용 및 시정요구사항과 이행내용('98,'99)
감사담당관	자체 사정계획 및 추진실적('98,'99): 공직기강 쇄신운동 추진계획대 실적
감사담당관	조사업무계획 대비 실적 특명조사 및 주요사업추진실적('98,'99)
감사담당관	사안(민원)별 또는 30인이상 진정접수 및 사유별 현황: 직접조사, 이첩실적 등 민원 처리실적, 민원심의위원회 및 민원대책회의 개최실적('98,'99)
감사담당관	'98,'99. 각 과별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우편, 전화설문 분석내용)
감사담당관	현장확인외 날 운영실적('98,'99)
감사담당관	안전(환경)순찰대 운영(실적)현황 및 조직('98,'99)
감사담당관	시민불편사항 접수현황과 보수집행 내역('98,'99)
감사담당관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시설물관리현황('99.현재)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총 무 과	'98,'99. 차량현황 및 정수대비 현재 보유대수(차종, 구입년도, 내구년수)
총 무 과	외국도시와의 결연 및 교류협력 현황
총 무 과	기능직, 고용직 등 직원의 직급별 배치현황(정원/현원): 자연감소 및 구조조정 후의 비교('98~'99.현재)
총 무 과	복무점검 결과 위반자 조치현황(6급이상, 7급이하, 기능직, 고용직 등)
총 무 과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처리실적
총 무 과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 및 수입지출내역, 예산지원 내역('98,'99)
총 무 과	명예동장, 명예구청장 제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총 무 과	소규모사업 동별 배정 및 집행현황과 부가가치세 납부현황('98,'99):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총 무 과	동별 인구현황 및 주민등록 전출입현황('98,'99.현재)
총 무 과	적령 및 취약아동의 동별 현황('98,'99)
총 무 과	업무추진비(시책추진,기관운영) 중 경찰관련 예산집행내역(종로, 동대문, 서대문경찰서 구분기재): '98,'99
총 무 과	고용직(방법원)의 배치실태 및 봉급체계, 정년에 관한 사항,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실적
총 무 과	명예퇴직자 직급별 현황 및 사유('98,'99)
총 무 과	구청 수익사업 내역
총 무 과	명예구청장 위·해촉 절차 및 교체명단(~현재까지)
총 무 과	통장 현황과 교체현황('98,'99)
총 무 과	중추절, 설날 귀성버스 운행현황(행선지 표시)('99)
총 무 과	과별, 동별 직원(직급별) 현황('99.10.25 현재)
총 무 과	통장인원수 대 회의수당 지급현황 및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98,'99)
총 무 과	직원승진심사 현황('98,'99 현재)
총 무 과	과별,동별 직원 순환보직 현황(5급이하 3년이상자)
총 무 과	6급이하 10년이상자 승진누락 현황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총무과	각 동사무소 현황(대지, 평수, 건축년도)
총무과	각 동별 민방위대 편성현황 및 제대운영('99)
총무과	민방위교육,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내용 및 징수현황(과년도, 현년도)
총무과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과 제대운영('99)
총무과	기관별 각종 공공요금: 전화(시외, 핸드폰), 전기, 통신물, 기타 구분기재) 사용현황 및 집행내역('98,'99)
총무과	각 동별 기술직(건축, 토목직)직원의 현황(직급, 담당업무)('98,'99)
총무과	고용직, 임시직 및 상용직 현황과 사용실적(각 과,동별):'98,'99
총무과	동별 업무추진비 경상비 등 예산배정내역 및 집행실적('98,'99현재)
총무과	종로사랑방 및 매점의 운영과 관련된 직제, 소요예산, 국비지원 내용, 매점의 매출 실적과 운영주체, 매점의 직원후생복지위원회 운영 근거
기획예산과	'98~'99 총투자사업과 예산현황
기획예산과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월별 집행내역('98,'99현재)
기획예산과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내용 및 집행실적('98,'99)
기획예산과	구청 모니터요원 위촉현황 및 활동내역(성명, 주소, 연락처, 활동분야):'98,'99
기획예산과	지역신문 지원현황(종로신문, 종로저널, 서울시정, 서울신보, 매일신보)('99)
기획예산과	각 과별 연구개발비 예산 및 집행내역('99)
기획예산과	소송수행현황과 승패 및 패소사유 현황('98,'99)
기획예산과	외국인을 위한 지역홍보물 발간실적('98,'99)
기획예산과	'97~'99 연도별 종로구 시비사업 및 지원사업(교부금 포함) 조치결과
기획예산과	'97~'99 연도별 종로구 총사업비 10억이상 서울시비 및 지원사업(교부금 포함) 사업현황(사업명, 사업개요, 총소요예산액, 연도별 예산액 및 결산액, 실산율)
시설관리공단	'98.시설관리공단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영업수익, 영업비용)
시설관리공단	각종 프로그램별 강좌수, 수강인원, 강사료 지급현황('98,'99)
시설관리공단	정원 및 현원, 과견인원('98,'99현재)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시설관리공단	사업내용 및 사업별 수입실적('98~'99):구체적으로 기재
시설관리공단	향후 운영계획 및 직제, 대관 및 시설관리계획
시설관리공단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 및 자본생산성(총자본 투자효율)에 관한 자료('98,'99)
시설관리공단	3급 직원의 '99.6월 급여내역서(시간외, 휴일근무수당 등) 및 '99년도 직원별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지급내역
시설관리공단	정원조정(증원) 근거와 관련자료
시설관리공단	직원 보수와 구청직원의 보수비교(각종 수당 포함)
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직금 적립내역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의 보조금 또는 문화진흥과 지원금 내역 일체, 파견직원 년간 보수 내역('98,'99~현재까지)
민원봉사과	외국인등록 현황 및 관련 제증명 발급현황('98,'99)
민원봉사과	민원행정제도 개선사항 제안(직원, 주민 구분)현황과 처리결과('98,'99)
민원봉사과	구, 동, 기타 기관 민원행정실적 종합평가 자료('98,'99)
민원봉사과	각 동별, 과별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 및 고충처리 현황('98,'99)
문화진흥과	자연보호행사 실시결과 현황('98,'99)
문화진흥과	각종 협의회 및 사회단체(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보조금지급실적('98,'99)
문화진흥과	사회체육 진흥을 위한 생활체육단체운영 지원내용
문화진흥과	각 동 및 구운영 취미교실현황과 참여인원 및 예산지원내역(동별로 강좌명, 참여 자, 수강료, 강사료 지급내역 기재):'98,'99
문화진흥과	종합체육시설업자 등록현황 및 체육시설업소 현황과 과태료징수현황('98,'99)
문화진흥과	자원봉사 단위사업 추진실적, 운영내용 및 자원봉사자 현황
문화진흥과	체육공원 및 관련시설 현황과 보수내역, 미보수내역 및 사유('99.현재)
문화진흥과	성인 및 청소년 오락실 현황, 불법영업 처리실적, 과태료 징수현황
문화진흥과	공연장 설치현황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한 명령 실적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문화진흥과	공연장 행정처분 실적(허가취소, 영업정지, 기타 경고, 주의 등)
문화진흥과	음반 및 비디오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 영업등록 현황 및 등록취소, 영업정지 명령, 과태료부과징수내역
문화진흥과	출판사, 인쇄소 등록현황 및 휴·폐업내역, 행정처분실적
문화진흥과	사립공공도서관 현황
문화진흥과	종로구 관광종합계획내용
문화진흥과	국내외여행업자 등록현황, 휴·폐업현황, 과태료부과징수내역
문화진흥과	문화재매매업소 허가내용 및 휴·폐업소내역
문화진흥과	문화재보수예산 집행내역(1억이상, 이하 구분) 및 지방문화재, 전통문화발굴 조사 실적
문화진흥과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정산서 자료 별도제출)('99)
문화진흥과	각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현황('98,'99)
문화진흥과	종로문화원 지원내역(강좌수, 수강자수):'98,'99
여 권 과	여권발급신청 접수현황 및 발급실적(신규, 재발급 구분):'98,'99
여 권 과	수입대비 경비출납 현황
여 권 과	'98,'99 여권발급수수료 징수현황(건수/금액)
여 권 과	여권발급과 관련한 국고지원현황('98,'99)
사회복지과	보육시설현황 및 운영비 지출내역 및 지도감독실적('98,'99)
사회복지과	부녀교실 운영 현황 및 관리, 예산집행내역('98,'99)
사회복지과	동별 모자가정세대 현황, 종합대책 및 실적('98,'99)
사회복지과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및 선도실적,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상담소 운영실적('98,'99)
사회복지과	청소년 이용시설 관리 및 행정지도 실적('98,'99)
사회복지과	소년소녀가장 동별 현황 및 지원실적('98,'99)
사회복지과	동별 노인정 현황 및 월별 보조금 지급내역('98,'99)
사회복지과	동별 노인정의 민원내용 및 처리실적('98,'99)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사회복지과	동별 노인정의 민원내용 및 처리실적('98,'99)
사회복지과	동별 노인교통수당 지급실적 및 목욕비, 이·미용료 지급실적(월별로 '98,'99)
사회복지과	서울가정도우미 계획 및 채용, 복무활동비등 지급실적(월별로 '98,'99)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중 3,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지급실적현황('98,'99)
사회복지과	동별 구호대상 현황과 장제비, 생계비 지원현황('98,'99)
사회복지과	동별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적, 결연실적('98,'99)
사회복지과	동별 이웃돕기 성금품, 재해의연금품 접수 및 집행현황('98,'99)
사회복지과	동별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원계획대비 실적('98,'99)
사회복지과	동별 저소득보훈대상자현황 및 지원실적('98,'99)
사회복지과	동별 의료보호대상자 현황 및 의료보호증 발급실적('98,'99)
사회복지과	대불상환금조정결의 및 징수,감액 결손처분 실적('98,'99)
사회복지과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실적('98,'99)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법인 현황 및 보조금지급 실적('98,'99)
사회복지과	관내 각종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실적('98,'99)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배정 및 양곡배정 현황('98,'99)
사회복지과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98,'99)
사회복지과	관내 가정의레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98,'99)
사회복지과	노숙자 수용시설현황과 운영현황('98,'99)
사회복지과	동별 사설노인정 현황과 보유인 및 보조금 지급현황('99.현재)
사회복지과	구립어린이집 현황(건축일시, 아동수:정원대 현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동별, 과별 동원인원과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내역('98,'99)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 현황(명단,금액,건수 등) ('98,'99)
지역경제과	양곡매매업소 현황 및 휴폐업신고 접수현황('98,'99)
지역경제과	연탄판매소 현황 및 지도실적('98,'99)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와 관련한 공사계획신고 및 처리실적('98,'99)
지역경제과	동별 도시가스 개설 및 보급현황(보급률, 미개설지역)
지역경제과	동별 양곡대금 체납현황('82,'84,'85년 3회)
지역경제과	직업안내소 현황 및 지도감독(행정처분포함) 실적('98,'99)
지역경제과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지급실적('98,'99)
지역경제과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 실적 및 현황('98,'99)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과태료 징수와 체납처분현황('98,'99)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대책 및 기본계획 수립내용('99)
환경위생과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실적, 체납처분 및 결손처리실적('98,'99)
환경위생과	동별 폭약사용승인 신고접수 및 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 규제명령 실적('98,'99)
환경위생과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월별로 '98,'99)
환경위생과	생활공해(소음, 분진, 진동, 악취)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실적(동별, 월별로 '98,'99)
환경위생과	유홍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현황 및 행정처분(과징금) 징수내용('98,'99)
환경위생과	유해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98,'99)
환경위생과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전자유기장, 식품제조업, 위생관리용역업 현황 및 행정지도처분 실적('98,'99)
환경위생과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무허가업소고발 등) 실적('98,'99)
환경위생과	유홍업소 불법영업정지 건수 및 행정조치 내역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따른 단속실적('98,'99)
환경위생과	폐수배출업소 현황과 관리실태(세탁소,염색소):'99 현재
환경위생과	불법염색업소 오·폐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98,'99)
환경위생과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공장 실태점검 현황('98,'99)
환경위생과	관내 매연단속 지점현황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청소행정과	쓰레기 민원사항 (원인별:적환장, 지연수리 등) 접수 및 처리실적 (동별, 월별로 '98,'99)
청소행정과	일반폐기물 수거, 운반업허가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98,'99)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동별 현황 및 지도감독 및 징계실적(동별, 월별로 '98,'99)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동별 공상진료비 지출결정내역 및 원인별, 사유별 내역('98,'99)
청소행정과	청소차량사고 원인 및 보험처리 결과(월별로 '98,'99)
청소행정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 및 수입액(동별, 월별로 '98,'99)
청소행정과	건축폐기물 처리업소 현황 및 업소관련민원접수처리실적('98,'99)
청소행정과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청소행정과	동별 쓰레기봉투 판매량 및 판매업소, 판매액('98,'99)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현황('98,'99)
청소행정과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신고서 및 관련대장
청소행정과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부과 내역('99.1.1~9.30)
청소행정과	현행 쓰레기봉투 판매방식 및 '98,'99 판매실적
보건소	'98~'99.9월까지 보건소예산 중 의료장비(체력단련시설 포함) 및 주요 의약품(년구입액 500만원이상) 예산 집행내역: 의료장비명, 규격, 제조회사, 가격, 용도/의약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등을 표로 작성
보건소	'98,'99 동별, 계절별(월별) 방역소독 추진실적(계획/실행)
보건소	병, 의원, 약국 행정지도 감독 및 처분실적: 대상업소, 지도감독 횟수, 사유, 지도내용(시정요구, 고발, 영업정지) 등을 표로 작성('98,'99)
보건소	보건소 주요 의약품의 구입(상위 10개 품목)과 재고현황: 약품명, 정수, 보관량, 연간 소요량, 월소요량, 사용기간 등을 표로 작성
보건소	'95~'98까지 종로구지역보건의료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건소	위생업무(식품,위생,환경) 보건소내 소재시 장단점에 대한 견해
보건소	보건소 방역현황 횟수('98,'99)
보건소	동별 독감예방접종 현황('98,'99)
보건소	에이즈환자 현황 및 관리상태('98,'99)
보건소	보건소 연간수입과 지출내역('98,'99)

8.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

가. 主要 是正·處理 要求事項

【행정관리국】

- 각종 체육행사에 예산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것은 매년 지적한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총무과)
- 명륜3가동과 승인1동 등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에는 취미교실 강사로 미지원, 행정차량의 회수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총무과)
- 팔각정 매점의 음식값이 너무 비싸고 품목도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원성이 많으므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개선토록 할 것(시설관리공단)
- 팔각정시설내 매점 공개입찰시 3개 업체만 참가한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추후에는 구의원에게도 알려주고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시설관리공단)
- 스포츠용품 판매점은 위탁 운영하던 것을 '99년부터 직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과 직영시의 수익성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방법을 재검토할 것(시설관리공단)
- 공단의 경영에 대하여 아직까지 자체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는 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와 별도로 반드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시설관리공단)
- 위탁운영계약서에 주민등록등본도 첨부되지 않는 등 증빙서류가 부실한 바 시정조치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
-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연간 1,200만원이나 되는 등 예산 낭비요인이 되고 있고, 특히 중량초과나 규격미달 봉투사용, 주소기재 착오 등 직원들의 실수로 인한 반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람(민원봉사과)
-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집행 후 정산 시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정산을 한 것은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므로 시정할 것(문화진흥과)
-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자연보호회 등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바 시정조치하도록 할 것(문화진흥과)

【생활복지국】

- 장례식장 이용시 밤 11시에 들어가도 1일로 간주하여 요금을 받고 비싼 자체 차량만 사용하게 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것은 상주에게 이중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사회복지과)
- 경로당 운영비 등 매월 지급되는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 전월 운영비의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 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고 정산을 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사회복지과, 사직동, 이화동, 창신2동)
- 어린이집 소방계획서를 작성, 비치하여 이에 따라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사회복지과)

-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반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청소행정과)
-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업소에서 사례비를 받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는 결국 세수감소와 직결되므로 시정할 것(청소행정과)
-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는 지역은 청소취약지구 등에 쓰레기가 제때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시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청소행정과)
- 규격봉투판매소에 봉투 공급시 발생하는 불량봉투나 부족수량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 및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청소행정과)

【감사담당관】

-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수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98년도에 비해 55%가 감소된 것은 비리가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

【동사무소】

- 통장회의수당은 월2회 회의시에 참석자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회의일과 참석 여부에 상관없이 100% 지급되고 있으니 반드시 회의 참석자에게만 지급할 것(사직동)
- 민방위훈련 면제 및 제외자로 처리할 경우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방위협의회 심의 후 제외처리하여야 함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미첨부한 것을 시정할 것(사직동)
- 매일신문은 막대한 구비로 지불하고 있으나 약 10% 정도의 배달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사직동)
- 65세 이상 독거 노인에게 지급되는 우유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교남동)
- 60세 이상 고령통장(1, 13, 15, 16, 18통장)은 교체할 것(이화동)
- 정부대여 양곡 13가구 56가마 36만 7,000원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독려하여 회수할 것(이화동)
-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 관련 대장 공부정리 소홀, 지출결의서는 회계처리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되지 않고, 직원의 편의에 따라 처리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이화동)
- 노인교통비 김승기 외 8명은 '98년 11~12월에 전출되어 '99년 1/4분기 교통비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1인당 3만원씩 27만원이 착오 지급되었으므로 회수할 것(창신2동)
- 정부대여 양곡채납자 31명 중 60kg 127가마 384만 8,100원을 주민등록으로 추적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토록 할 것(창신2동)
- 쓰레기규격봉투의 감면대상자에게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당월에 배부하는 것은 즉시 배부하고 지급대상자(수령자) 서명을 받도록 할 것(이화동)
- 통·반장 구조조정이 미흡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시정할 것(사직동, 교남동, 이화동, 창신2동)

나. 建議事項

【행정관리국】

- 명예구청장에 대한 내부지침을 마련, 각종 행사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우 등에 관하여 선출직인 구의원과 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바람(총무과)
- 명예구청장 자택에 설치한 「종로구민의 소리함」을 제작 설치했는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 자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총무과)
- 구의원에게 행정전화를 설치해줌으로써 구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총무과)
- 각종 구정게시판에 1면 정도 구의원 활동사항 사진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총무과)
-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5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예산을 일괄 편성하지 말고 각 동별로 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총무과)
- 구민회관 신축관련 지방채를 40억 발행하였으나, 잉여금이 발생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검토하기 바람(기획예산과)
- 북악팔각정 전통한옥매점 위탁운영과 관련 입찰참가서를 동일인이 작성하고 입찰금액도 3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은 담합의혹이 있는 바 사유서를 제출 바람(시설관리공단)
- 구민회관 등의 관리로 증가된 정원 충원 시에는 구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공단 자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공단직원의 일반직원 신규채용 시에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50% 정도는 공개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시설관리공단)
- 구민생활관의 수영 등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되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 바람(시설관리공단)
-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공단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구의원을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시설관리공단)
- 생활체육시설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와 문화진흥과로 이원화되어 시설개·보 수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문화진흥과, 공원녹지과)
- 종로사랑지 발행시 상업광고 또는 공익광고를 유치하고 지질을 낮춰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홍보효과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문화진흥과)
- 문화관광업무 추진시 국악공연 등 인원 동원성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기 바람(문화진흥과)
- '98년 일간지 및 지역신문 구독료 2억 5,200만원은 구민의 혈세를 너무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부수를 조정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 바람(문화진흥과)

【생활복지국】

-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립 경로당이 인구에 비해 너무 많이 설립되어 있어 예산 낭비 요인이 되므로 통·폐합하는 등 과감히 정비하기 바람(사회복지과)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단순한 벽보 제거나 쓰레기 줍기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실적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시행할 것(지역경제과)
- 지붕길 확장공사로 분진이 많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 해소대책을 강구하기 바람(환경위생과)

-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시 미성년자 출입여부 확인과정에서 업주의 반발 또는 비협조로 단속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업주와 미성년자를 모두 쌍벌처벌할 수 있게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 하도록 할 것(환경위생과)
- 재활용품의 수거시 정부에서 높은 가격으로 보상하고 수거한 재활용품은 업체에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여 재활용 촉진에 기여토록 관계부서에 건의하기 바람(청소행정과)
- '99년 청소행정과 예산이 연간 약 160여 억원으로 세출예산의 17.7%를 차지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직영지역의 청소업무를 청소대행업체로 과감히 이관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도 만전을 기할 것(청소행정과)

【보 건 소】

- 독감과 같은 질병예방 접종 시에는 보건소 방문이 교통 등으로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현지 방문하여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보건소)
- 보건소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위치나 진료내용 등을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보건소)
-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수거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보건소)

【감사담당관】

-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가 불가하면 당사자에 대한 수시교육이나 현지지도를 통해 행정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감사담당관)
- 동행정 감사 시에는 동장이나 직원들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관심도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할 것(감사담당관)
- 민원안내원이나 직원들에게 인사예절, 전화친절도 등 친절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할 것(감사담당관)

【동사무소】

- 아름다운 종로인 사랑고리 결연사업 및 깨끗한 종로 가꾸기 사업추진에 충실한 종로5·6가동 박인수, 장경옥, 청운동 주호돈 표창 상신

11. 1999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의안 번호	716
----------	-----

제안일 : 1999. 12. 23.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감 사 기 간 : 1999. 11. 29 ~ 12. 4(6일간)
- 감사대상기관 :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19개동)
- 감사반의편성 : 오피근 의원 외 8인
- 감 사 장 소 :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실, 동사무소 감사장
- 주요감사실시내용
 - 1999년도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현황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1999년도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각종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의 지도감독사항
 -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조합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 시민아파트 관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업무 추진사항 및 옥외광고 관리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 등 건축행정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 보상업무 추진사항과 가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 주요 도로 및 하수사업과 수해,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대 조성 및 공원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건축관련 민원처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등
- 감사실시경과
 - 시정·처리 요구사항 : 38건
 - 건의사항 : 26건

3. 보고서(안) : 별 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1999. 12. 23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제 목 : 1999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견

위의 보고서(안) 채택의 견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발의합
니다.

첨부 1999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1부. 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案)

1. 監査의 目的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함으로써 구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통제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監査期間 : 1999. 11. 29. ~ 12. 4(6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각 동사무소(21개동)

4. 監査實施經過

○ 감사반의 구성

- 위 원 장 : 오 필 근
- 간 사 : 최 강 순
- 감사위원 : 오 금 남, 현 수 한, 정 병 환, 이 형 술, 김 복 동, 김 이 환, 선 상 선

5. 監査日程 및 場所

감 사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99.11.29 ~ 11.30	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현장확인등
'99. 12. 1	재 무 국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실	"
'99. 12. 2	도 시 관 리 국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실	"
'99. 12. 3	건 설 교 통 국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실	"
'99. 12. 4	당면사항 관련회의 및 현장조사	재무건설위원회회의실	"

6. 現地確認班 編成

반별	동 명	위 원 명	비 고
1	청운동, 효자동, 무악동	유 찬 중, 오 금 남	
2	부 암 동, 평 창 동	정 태 순, 김 이 환	
3	삼 청 동, 가 회 동	김 정 대, 김 복 동	
4	교 남 동, 사 직 동	홍 기 서, 선 상 선	
5	종로1,2,3,4가동/5,6가동	이 현 구, 최 강 순	
6	명륜3가동, 혜 화 동	이 동 규, 이 형 술	
7	이 화 동, 창신 2동	안 재 흥, 정 병 환	
8	창신 3동, 승인 1동	천 상 욱, 오 필 근	
9	창신 1동, 승인 2동	박 중 식, 현 수 한	

7. 主要監査 實施內容

소관 부서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재 무 과	국·공유재산 수입(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조정수납 현황('98,'99)
재 무 과	무주부동산 및 은닉무주재산 발굴 및 공고현황('99.현재)
재 무 과	하도급승인 현황('98,'99)
재 무 과	계약(납품)기한 연기처리 현황('97,'98,'99)
재 무 과	건설용 관급자재의 품목별 구매현황('98,'99)
재 무 과	수입증지 수불현황(부서별 배정 및 보관액)
재 무 과	'99.각종 공사입찰 및 낙찰현황[공사명, 사업기간, 낙찰회사명, 사업비(낙찰가), 설계변경 후 공사비, 설계변경사유(구사업 준공일자 확인 별도 서류복사, 사업비 지출내역)]
재 무 과	'98. 지방채 발행 이후 자금입금 및 이후 집행실적, 월별 구금고 구청간 일계표, 지방채 이자부담금 내역 및 예치 지방채 이자수입내역
재 무 과	정수품 구입현황과 비품 사용현황('99.현재)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재무과	회계별 기금별 예탁내용 및 이자발생 현황('98,'99)
재무과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및 자금운영계획
재무과	'99.수의계약 현황 및 사유(준공일확인서류, 계약서류, 사업비최종지불서류 별도 제출)
재무과	'97~'99 연도별 종로구 총사업비 10억 이상 서울시비 및 지원사업(교부금포함) 집행과정 및 절차(사업계약방식, 설계, 시공, 감리계약서, 응찰회사별(회사명, 회사 소재지,대표자, 주소, 연락처), 응찰가, 낙찰예정가, 낙찰가, 설계, 시공감리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당초계획서 및 추진결과 및 현재 상태 등)
재무과	구기동 139번지 일대의 서울시 개발계획에 따른 각종 창고의 이전대책
재무과	구유재산 현황 및 사용목적
재무과	과출소통합 재산관리 현황
세무1과	법인의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처리 현황('97,'98,'99)
세무1과	법인에 대한 이의신청서 진달 및 처리현황('98,'99)
세무1과	'96년 이후 각 동별 호화주택 호수 및 각종 지방세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
세무1과	'96~'99.9월 현재 평창동내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전시시설의 지방세 징수 내역 및 과세근거
세무1과	지방세 세입현황('97~'99)
세무1과	비과세와 과세지역 현황
세무1과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 비교현황
세무1과	세외수입, 지방세(세목별)체납액 현황 및 고액 체납자 징수추진현황
세무1과	과오납 미환불액 현황('98,'99)
세무1과	세금관련 행정소송건 현황('98,'99)
세무1과	적선동 156번지 재산세 및 부과내역 조치현황('98,'99)
세무1과	재산세 부과 연도별 상승비율과 부과기준표, 타구와 비교
세무1과	법인실사 및 추진내역
세무1과	2000년도 세수증대방안과 체납징수를 위한 향후계획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세무 2과	지방세 시효결손 처분현황('98,'99)
세무 2과	세무관련 각종 민원의 종류별 접수현황('98,'99)
세무 2과	소득할 주민세, 양도세, 주민세의 징수현황 체납률 및 과오납 현황('98,'99)
세무 2과	세금체납에 의한 허가 등의 제한 및 취소요구 현황('98,'99)
세무 2과	지방세 감액처리 현황(감액금액, 사유):'98,'99
지적과	부동산중개업허가 년도별 허가처리현황('95년 이전, '96,'97,'98,'99)
지적과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 현황 및 위반 단속실적('98,'99)
지적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세원조사 및 부과징수('97,'98,'99)
지적과	부동산등기지연 과태료 부과현황('97,'98,'99)
지적과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사항('97,'98,'99)
지적과	토지이동 처리현황('97,'98,'99): 일반분할, 도시계획선분할, 종전분할, 건축선지정 분할, 등록전환, 신규등록, 등록사항정정 및 복구현황
지적과	개발부담금 부과조정 및 감액처리현황('97,'98,'99)
지적과	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 및 조정현황('97,'98,'99)
지적과	종로구와 타구의 공시지가 상하조건표 현황
지적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및 이의신청('98,'99)
지적과	종로구 지적측량 향후계획
지적과	측량으로 구유재산 색출건수와 그 내역('98,'99)
주택과	민영주택 사업계획승인현황 및 사용승인 현황
주택과	민영주택 가사용승인 현황 및 사유
주택과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서 발부현황
주택과	건축물 증·개축 신고수리 내용('98,'99)
주택과	동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건수, 금액, 징수액)과 이행강제금 미이행 현황('98,'99)
주택과	동별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 고발 건수('98,'99)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주택과	평창동 북악맨손 재건축사업 사전승인부터 사업승인까지 관련 각 과 협의사항 (원본대조필) 및 군협의 각서내용, 사업결정의 구체적 내용, 사업계획 승인내용, 변경승인내용 등
주택과	종로구 주택보급률, 전세 및 월세 가구수 현황,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액 및 집행 실적('98,'99)
주택과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액 및 집행실적(회수금액, 미회수액, 미회수액 대책):'98,'99
주택과	주택관련 감사원, 시, 구 감사지적사항('98,'99)
주택과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추진(보상)현황 및 예산액('99.현재)
주택과	위험건물 축대 절개지 등 시설물 관리현황('99.현재)
주택과	시민아파트 보상 및 철거현황, 대책
주택과	재건축재개발조합 추진현황 자료 및 감독상 행정지도 내역서
도시계획과	'96~'99.9월 토지형질변경행위와 관련한 자료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현지조사보고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과정에 관한 기록, 의결내용에 관한 자료 (찬·반 숫자 포함) -허가지 인근의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에 관한 자료 -허가지역의 원형보존 지구에 관한 내용과 현황 -허가유보 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허가된 지역에 관한 자료 -부결된 허가신청서 중 보완 후 허가된 곳에 관한 자료 -1차 허가 후 그 뒤 면적이 증가되어 2차 허가된 지역에 관한 자료 -반려사유를 사후에 이행하도록 조건부 허가된 자료 -미준공지역에 관한 자료, 미준공지역 중 재해발생 우려 지역 -허가 후 공사 중단된 곳의 현황과 그 사유 -공사이행보증금에 관한 자료, 금액현황, 반환내역 등 -허가신청의 유보 및 부결된 허가신청서에 관한 자료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에 회부되어 허가되었거나 부결된 것에 관한 자료 -허가가능 지역이라도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향토적 가치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허가된 지역에 관한 자료 -현재 시행 중인 도시계획법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자치구의 의견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현황('98,'99)
도시계획과	무허가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도시계획과	무악동, 교남동 상세지역 추진세부계획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공원, 구거지, 하천 등
도시계획과	상세계획 진척과 향후대책
도시계획과	도심재개발지역선정과 현재 추진현황
도시계획과	신영동 산 1-1, 1-5번지 토지형질변경 허가내용과 관련된 감사 및 조치사항, 서류 일체(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건축업자변경사유
도시계획과	석과정 3필지 중 입야 1필지와 2필지 형질변경에 대한 서류 일체, 감사원, 시·구 감사 지적사항 현황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허가현황과 유형별 현황('98,'99)
도시계획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풍치지구) 처리현황(해제, 존치, 완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98,'99)
건축과	장기미준공(미준공사유), 미필 건축물현황 및 향후 처리방안(~현재까지 년도별)
건축과	10층 이상 건축물 허가건수
건축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98,'99)
건축과	건축시 도로점용료 징수현황('98,'99)
건축과	건축사무소 감리사 지도점검 지적사항('98,'99)
건축과	위법건축물 현황('98,'99)
건축과	준공 후 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 현황['95~'98:적출 및 조치건수, '99:적출 및 조치내역(건별 내역서)]
건축과	건축허가 후 허가취소 고발 과태료 부과실적('98,'99)
건축과	노후건물 위험시설물 관리현황('98,'99)
건축과	건축관련 감사원, 시·구 감사지적사항('98,'99)
건축과	다가구, 다세대 옥외 물탱크 설치 위반현황 대책
건축과	건축후 가사용승인 현황
건축과	관내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중 위법건축법(무단용도변경 등) 적발 현황 및 조치사항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건축과	구민회관 공사관련 유형별 민원현황(해결, 미해결 구분 기재):'98,'99
공원녹지과	가로수 신식, 보식 현황(수목별, 예산액) 및 보호관 설치공사 내역:'98,'99
공원녹지과	인왕산 산책로 현황과 예산('99)
공원녹지과	인왕산 식목조성 내용 및 예산('99)
공원녹지과	녹지관리시설비 사업 집행내역('98,'99)
공원녹지과	가로수 유지관리 현황('98,'99)
공원녹지과	살충제, 살균제 예산집행 내역('98,'99)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설계변경공사 현황('98,'99)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시설물 사용료 부과징수현황('98,'99)
공원녹지과	수목정정작업 현황
공원녹지과	시설하자보수 및 보식현황('98,'99)
공원녹지과	그린벨트 내 무허가건물 시설물 단속현황('98,'99)
공원녹지과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단속실적('98,'99)
공원녹지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린벨트 내의 행위승인허가 현황('98,'99)
공원녹지과	임야훼손 및 산림법 위반자 단속현황('98,'99)
공원녹지과	'98,'99약수터 수질관리현황(무약약수터 개발 대책 및 추진사항 포함)
공원녹지과	국비, 시비, 구비 예산 사업실적 현황('99)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관리 유지비 내역 및 투자금액('98,'99):수목, 병충해약제 구매현황 포함
공원녹지과	공원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내역
공원녹지과	관내 주택가 및 도로변 건물 위험수목 제거현황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예산집행 현황 및 설계변경 공사내역('98,'99)
공원녹지과	중요공원 쓰레기처리현황과 처리인원(월기준)
공원녹지과	중요공원 구관장 현황 및 조성내역과 관리인 현황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98,'99)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건설관리과	'99년도 도로 일시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98,'99)
건설관리과	도로점용 및 적치물 동별 현황('98,'99)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허가 신고 조치내용('98,'99)
건설관리과	노점상 발생건수('99.현재)
건설관리과	도로가관점 수량 및 최초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 및 체납자('98,'99)
건설관리과	도로, 하천, 구거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98,'99)
건설관리과	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가로환경 정비(주야)실적 및 예산집행
건설관리과	건설관리 관련 감사원, 시·구 감사지적사항('98,'99)
건설관리과	관내 간선도로에 설치한 한전승압기(TR)수와 관리대장, 수입실태
건설관리과	공중전화 부스의 설치 및 수입금 실태('98,'99)
건설관리과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부과 허가건수 및 징수현황('98,'99)
토목과	불량맨홀 정비공사 실적('98,'99)
토목과	재해대책기금 운영현황('98,'99)
토목과	가로등 수신기 관리현황
토목과	관내 육교 관리실태와 육교설치 위치선정 기준
토목과	'99년도 토목공사(도로개설, 확장) 현황
토목과	필운동-신교동간 공사진척사항 및 준공예정일, 예산현황
토목과	도로개설 중 미개설도로 현황
토목과	도로개설 설계변경 현황
토목과	도로복구비 부과징수 및 굴착공사내역('98,'99)
토목과	토목관련 감사원, 시·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98,'99)
토목과	시비 지원 도로개설 및 도로예산 집행내역('98,'99)
토목과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98,'99)
토목과	각 동별 보안등수리업자와 수리건수('98,'99)
토목과	'99년도 도로개설 시설비 예산액과 집행내역('98,'99)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토 목 과	염화칼슘 구입비 및 각 동별 사용량('98,'99)
토 목 과	관급자재 구입 및 수불현황('98,'99)
토 목 과	각 동별 토목공사비 내역(편익사업)
토 목 과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내역
토 목 과	삼청동 28-42 주변도로 B=6, L=80m 내역
토 목 과	굴착복구공사현황(원인자+관리청 복구)
토 목 과	설계변경 투자예산 증액내역('98,'99)
토 목 과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 내역
토 목 과	이화동 3-2 주변 하수도정비 내역
토 목 과	지하수법 위반자 조치 및 벌과금 부과징수 내역('98,'99)
토 목 과	지하수 사용료 부과 내역
토 목 과	'99.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공사 내역
토 목 과	삼청동 28-42 물받이공사 내역
토 목 과	가회동 감사원 도로개설, 낙산근린공원화사업, 북악팔각정, 종로지하도 보수공사, 동별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공사, 추진현황(사업계약서(원본대조필), 사업개요 및 예산계획, 년도별 '99년 5월 현재 서울시 예산대비 예산지출현황 및 전망, 사업계획 및 전망, 사업별 관련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 사업추진일정보고서, 설계, 시공, 감리계약서, 사용승인계약서 등 원본대조필 사본 공사계약방식, 계약시 응찰회사(회사명, 주소, 연락처, 대표, 회사 주요경력 등) 응찰가, 낙찰예정가, 낙찰가, 계약심의회 회의록 사본)
토 목 과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체납관리, 제설청구 현황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99.현재)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 택시승차대 이전, 보수, 신설 현황('97,'98,'99)
교통행정과	관내 유형별 장애인 차량 등록현황('99.현재)
교통행정과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에 표시된 장애인 주차표시 면수현황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누락 정리현황('98,'99)
교통행정과	인왕교통 팔각정 허가내역(마을버스운영노선) 및 전 마을버스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진실적('98,'99): 계약서, 중도금, 잔금 복사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교통행정과	노상주차장 건설사업비 집행내역('98,'99)
교통행정과	도로표지판 및 보행자 안내판 설치현황
교통행정과	자동차 등록현황(유형별): 등록차량, 등록세 미납현황('98,'9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투자현황과 금융예탁금 현황
교통행정과	각 동별 모든 차량 대수현황('98,'99)
교통행정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현황
교통행정과	반사경 설치 및 정비내역
교통행정과	주차장시설(동부, 중부, 서부지역별)현황 및 관리운영 현황
교통행정과	동별 규격별 과속방지턱 총괄, 설치현황 및 철거
교통행정과	동별 과속방지턱 도색 예산과 도색 개수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징수현황체납(압류)처분 현황(동별, 월별 '98,'99)
교통지도과	운수사업에 대한 관계법령위반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
교통지도과	무단방치차량 회수대책현황('98,'99)
교통지도과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98,'99) 및 범칙금 시효결손처리 현황
교통지도과	'98,'99 주차단속원 운영현황(각 동별 단속건수)
교통지도과	견인대행 실적내용('98,'99)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현황
교통지도과	자동차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98,'99)
교통지도과	과태료 과오납 및 단속스티커 오손, 훼손 현황('98,'99)
교통지도과	우리집 주차장갓기 사업비 보조금 내역
교통지도과	공익요원 오토바이 등 기타 사고시 처리현황(~현재까지)
교통지도과	자동차정비업소현황(허가, 무허가 구분)
교통지도과	이면도로(거주자)구획선과 수입현황('98,'99)
교통지도과	유형별 주차장 수입금액 현황('98,'99)
교통지도과	노상주차장 개설 및 입찰현황(위탁)
교통지도과	방치차량 이전 및 폐차 현황('97,'98,'99)

소관 부서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교통지도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현황(실시구역, 주차대수)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현황

8. 監査結果 및 處理意見

가. 主要 是正·處理 要求事項

【재무국】

- 동소규모사업의 건설업자 계약에 있어 일부 특정업자가 전 동공사를 독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통해서 서류 작성을 쉽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참여함으로써 공사의 신뢰와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것(재무과)
- 청계천 복개구조물 준설공사는 당초 설계금액 1억 4,282만 4,000원이 설계변경 후 1억 8,305만 6,000원으로 대폭 증가되는 등 '99년 준공기한 공사 67건이 설계변경이 수반되었는 바 향후는 당초설계에 적정을 기하여 이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할 것(재무과)
- 구 세입예산의 집행시기를 고려한 후 은행예탁상품을 구분하여 예탁 이자수입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각종 구의 기금도 같은 맥락에서 이자수입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할 것(재무과)
- 구의 재정사항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바 구 재정 확보와 담세정의 차원에서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이 세금징수를 소홀히 한 것이 사료되는 바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세무2과)
- '92년 이민자인 종로구 체부동 120-11호 정중옥의 '94년 주민세 5,250원, '96년 주민세 5,890원, '98년 주민세 5,890원 부과에 있어서 실제 비거주자에게 부과되어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바로 잡히지 않고 민원인의 불평을 사고 있는 바 시정조치 할 것 (세무2과)
- 사직동 100번지 이순자 과오납금 환급 통지가 '97년분이 현재 통보되는 등 적기에 통보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또 과오납금 청구절차가 복잡하여 청구인 불편이 많은 바 이를 민원 편의 위주로 개선할 것(세무2과)
-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잘못 파악하여 착오 과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리하여 착오 과세로 민원을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세무2과)
- 지방세 시효결손처분에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압류목적물이 있는 세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런 세목의 체납 발생시는 신속히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시효결손 처분이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세무2과)

【도시관리국】

-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소형평수는 즉시 철거하는 실정이나 대형평수는 철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감수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나 대형평수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철저를 기할 것(주택과)
-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부과에 형평성이 없거나 일부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고, 또 일부 악덕 건축주는 무허가건축을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이를 의도적으로 계속 체납시키는 방법을 동원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주택과)
- '9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서 부과 2억 1,391만 6,000원에 징수 5,220만 6,000원으로 징수율이 약 26% 정도로 부진한 바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주택과)
- 낙산복원사업은 시비 약 2,0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인 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보상대상자에게는 적절한 보상 등을 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할 것(주택과)
- 플래카드 게첨기간이 종료된 플래카드는 적시에 제거하여야 하나 구 관련 플래카드는 게첨기간 종료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사례가 많은 바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것(도시계획과)
- 충신어린이집은 '94년에 준공하였으나 부실시공으로 옥상 우수 및 벽체 습기가 차는 등 복합적인 부실 건물인 바 현장조사 후 적절한 보완 조치를 강구 바람(건축과)
- 적선동 목삼빌딩은 인근 지반에 균열이 있는 등 위험상태인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건축과)
- 인왕산에 불법기도 또는 무속행위 등이 행하여지고 또 일부 지역에는 자릿세를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단속을 철저히 할 것 (공원녹지과)
- 중요공원의 야간 이용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이므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특히 공익근무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적극적 관리를 검토 바람(공원녹지과)
- 공원 또는 가로등에 예산으로 식재한 수목이 고사한 사례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보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공원녹지과)
- 공원이나 가로에 식재된 수목에 해충 피해가 자주 목격되고 있으니 사전 방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수목 벗길썩기 등에 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된 공공근로자들의 작업태도가 불성실한 바 작업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공원녹지과)
- 가로수 식재목이 생육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보조턱을 제거하고 또 뿌리 확장으로 보도블럭 요철이 생긴 것은 조속히 보완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청운동지역 일부 가로수(은행나무)가 옆 건물 쪽으로 가지가 돌출되어 건물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를 제거하기 바람(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 종로나 청계천변 인도에 과도한 상품적치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통행인에게 위법이나 불법을 방지한다는 행정력 부재의 지적을 받고 있으니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건설관리과)
- 가로 가관점이 이권화 되어 상당한 권리금에 내부 전매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 바 관계법규에 의한 적절한 점용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바 획기적인 점용료 및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종로통에 노점상으로 인하여 통행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크게 저해되고 있으므로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건설관리과)
- 돌출간판 점용료 부과에 있어 동일 인근지역임에도 점용료 부과가 형평성과 정확성이 결여되어 이웃간 민원이 유발되는 등 점용면적의 산정과 점용료 부과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건설관리과)
- 각종 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압류조치 등 채권보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건설관리과)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공사에 시공업자가 주민의 민원수렴에 소홀한 점이 있으므로 공사 감독관의 현장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토목과)
- 관내 보안등을 관할동장이 업자를 선정 수리하고 공사비를 지급하게 하고 있으나 각동에 회계처리지침이나 비치서류 등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없어 동별로 임의 작성하는 사례로 비효율과 합리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통일적 기준을 시행하기 바람(토목과)
- 가회동사무소~감사원간 도로개설공사가 같은 해 공사시행 중에 설계변경을 3회 했다는 것은 사전 조사가 부족하였거나 설계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공기 지연이나 예산 추가 부담 등의 문제가 있으니 향후 사전설계에 적정을 기할 것(토목과)
- 하수도, 맨홀 등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우기 시에는 이로 인한 내수침수 사례가 야기되는 바 사전 준설 등에 철저를 기하여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토목과)
- 도로굴착 공사를 동절기에 집중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도로파손이 가중되고 있고, 또 복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정할 것(토목과)
- 염화칼슘을 동절기 결빙에 대비하여 각 동별로 취약지역에 배정하고 있으나 종로5·6가동, 이화동 등 일부 고지역에는 배정이 충분히 안되고 있으니 취약지역별 배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토목과)
- 기존 건축물에서 주차장 용도를 상가 등으로 무단용도변경한 사례에 대하여 원상 회복되도록 조치할 것(교통지도과)

【동사무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물품구매시 가격사정 후 물품 납품시 물품검수조서의 작성 후에 대금 지불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99년 1/4분기, 3/4분기 지출결의서상 전부 누락되어 있는 사항 시정할 것(이화동)
- 물품구입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물품검수조서의 작성 후 구입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나 전혀 물품검수조서의 작성 없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상의 일자와 지출결의서 상의 일자 상이하는 사항 시정할 것(창신2동)
- 건축법 제27조제1항, 동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건축물 철거 시에는 7일 전 신고 후 철거 멸실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98, '99년 허가 사항 중 일부가 사전 신고 없이 철거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법령의 미숙지로 누락한 이화동 37건, 창신동 13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화동, 창신2동)

나. 建議事項

【재무국】

-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세입선 등을 고려할 때 회계년도 개시를 2월, 3월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관계부서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재무과)
- 회계별, 일자별, 예탁내용, 이자발생현황을 기간별 이자율 및 관급자재 품목별 구매현황에 대한 감사자료에 제출 수량의 소수점 표시가 잘못되는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재무과)
- 서울시 소유로 있는 종로구 사간동 122-4호(안국파출소) 및 무악동 67-1호(무악파출소)를 빠른 시일 내로 종로구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재무과)
- '99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112건에 달하고 있으나 계약업자는 대부분 관외 업자이므로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로지역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재무과)
- 세무공무원의 불친절이 널리 인식되어 있으므로 민원인들이 세무1과·2과를 내방할 때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히 응답을 하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세무1과, 세무2과)
- 공시지가 상·하향 조정 신청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 개인이익을 우선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의신청 분에 대하여 엄격히 대처하기 바람(지적과)

【도시관리국】

- '89년에 제정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특별조치법의 적용으로 추진한 사업지구가 오히려 주택의 슬럼화를 촉진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여론이 사업현장에서 대두되고 있으니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 등을 개정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기 바람(주택과)
-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지구 11개소의 사업내용 중에는 놀이터, 어린이집 등 일부 복지시설이 전혀 반영 안된 지구에 복지시설의 설치 필요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주택과)
- 각 과 관련 시 공사나 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구의원에게 공사 사실을 통보하여 홍보는 물론 공사 시공 편의가 도모되도록 하기 바람(주택과)
- 청진동 재개발지구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의 지주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바 반대지주를 설득하여 추진할 방안이 무엇이며, 설득이 안되어 현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 청진지역의 노후건물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할 것(도시계획과)
- 세검정 삼거리에서 삼청동간 지하터널도로 등 미시행 도시계획 도로는 조속히 해제 조치를 하여 관련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도시계획과)
- 장기 위법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202건으로 이로 인하여 재산세 부과 문제나 재산권 형성상 문제점 등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정 대책을 건의할 것(건축과)
- 주민자치센터가 된 동의 건축 신고업무가 구에 이관될 경우 건축과의 건축직 보강이 필요한 바 이를 검토 바람(건축과)
- 세종로 국민카드 앞 공지에 녹지대 조성을 작년에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설치되었으니 처리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은정목의 경우 가지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으니 개화 전에 가지치기를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 간선도로상에 설치된 들출 맨홀을 조속히 정리하여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토목과)
- 뒷골목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의 요철부분을 사전 정지함이 없이 덧씌우기 공사를 함으로써 덧씌우기 단면이 기준(5cm) 이하로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도한 요철부분은 사전 정지 후 덧씌우기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바람(토목과)
- 공사관련 관계공무원은 청렴성과 친절성 등 공무원 기본소양에 대해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사업자와의 관계와 또 공사장 주변 주민의 민원사항 수렴에 유념하여 최근의 불미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토목과)
- 하수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을 면밀히 연구할 것이며, 맨홀 설치시 양생기간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성품을 매립하는 식의 공법을 연구 검토하기 바람(토목과)
- 명륜1가동 5번지의 14호 외 6필지의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조성함에 있어 353평의 토지에 57대의 차량만 주차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토지의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비현실적 계획이 아닌지 소명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 변경을 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큰 관심사가 되므로 사전에 의회에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교통행정과)
- 주택가 골목주차로 야간에 화재나 위급한 자 발생 시 차량 진입이 곤란하여 대형사고로 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 야간 21:00 이후에 소방도로 통행 지장차량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교통지도과)
- 전용차선의 실선 설치와 점선설치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있는 바 사실 조사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재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교통지도과)
-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어린 학생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바람 (교통지도과)

【동사무소】

- 주요물품의 경우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구분 비품대장을 정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야 함에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사직동)
- 세출예산 정리부의 처리가 미흡하므로 명확하게 회계처리 예규에 의거 정리할 것(이화동)